



화성파크드림 **공주월송**

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제출

※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1.14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반드시 '상세'로 발급받으시기 바람.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서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반드시 "상세"로 발급받으시기 바람.

구분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무주택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등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자금조달계획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 ※ 모든 주택형 제출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
	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)
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를 표기하여 "상세"로 발급 -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
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(2022.01.14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공고일 현재 혼인중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
	소득세 납부증명서류	본인	•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
	해당자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
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출입국사실증명서		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	•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•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직계비속	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	직계존속	•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 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 주소 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"전체 포함"으로 발급)
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
비사업자 확인각서		본인	• 비사업자의 경우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 / 견본주택 비치
복무확인서	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부동산 소유현황	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 가액(3.31억원)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
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	※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		
	위임장	본인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/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발급분에 한함, 대리발급분은 절대불가 (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)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



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및 기타사항(1)

■ 소득 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 입증 확인 및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(근로소득자용) ※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▶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(“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”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	해당직장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※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되지 않을 경우 →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(개인정보 삭제) 	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	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 지급조서) ※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	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	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	세무서, 국민연금 관리공단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사업자등록증 사본 	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
	법인사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(신고자용) ·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· 법인회계결산서 	세무서 등기소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위촉증명서(직인날인)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	세무서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택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) 	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	해당직장 국민연금 관리공단	
무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사업자 확인 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	견본주택	

※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.
 ※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”에 따름.
 ※ 모든 제출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음(예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
 ※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·변조 검증을 실시하며, 제출서류의 위·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음.
 ※ 당사업지는 22년 모집공고로 소득기준을 산정할 때 전년도인 21년도 소득을 봐야하나 현 연말정산 전으로 전전년도인 20년도 소득산정을 하게됨 단, 휴직, 퇴직자인 경우 어느시점에 퇴사 복직했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상기서류 제출시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바랍니다.



화성파크드림 **공주월송**

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및 기타사항(2)

■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	해당직장 세무서 건강보험공단
	자영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※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	
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아래 ①~④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 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납세사실증명(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) ※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 중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	해당직장 세무서

■ 자산보유기준

구분	자산 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 3,100만원 이하	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	
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													